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00호 2013. 5. 2(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39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040호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6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31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68호 사천시 품질·환경 경영규정 폐지규정	10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11
○ 사천시 고시 제2013-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13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3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3)

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 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장애인
 - 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감면
 - 가.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받는 사람(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 나. 10명 이상 단체입장
 - 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전 관람석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할 수 있다(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예술 회관 관리자와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4)

[별표 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5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공 연	행 사	
대 공 연 장	오전	100,000	1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사용료는 오전·오후·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함 ○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한다. ○ 익일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해 22:00 이후 사용 시는 주간 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징수함(1회 사용 3시간 기준)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6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단, 야간시간 초과 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오후	120,000	132,000	
	야간	150,000	165,000	
소 공 연 장	오전	15,000	1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분 미만 초과 : 당해사용료의 20퍼센트 - 30분 이상 6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단, 야간시간 초과 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오후	20,000	20,000	
	야간	25,000	25,000	
전시실	1일/m ² 당	120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5)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 형	1회공연	20,000	1.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2.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부대시설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4.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조명 1) 기본-Ceiling Source Four 750W light 18대, 무대 퍼넬 64대 등 조명시설 사용가능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조명디자이너, lighting operator는 공연장 측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6. 음향(마이크 추가 시) 1) 유선마이크 대당 5,000원 2) 무선마이크 대당 10,000원 3) 콘덴서마이크 대당 10,000원 7.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1) 30분 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2)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50퍼센트 3) 60분 이상 초과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단,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 8. 무대, 조명, 음향 설치·철거는 사용자측이 하여야 하며, 공연장측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소 형	1회공연	10,000		
댄 스 플 로 어 (재료비 사용자 부담)		1회	40,000		
합 창 전 용 대		1일	30,000		
덧 마 루		1회	3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조명 기본	1회공연		50,000
		Follow spot light	1회/대		10,000
		Par light 64	1회/대		2,000
		Par light 46	1회/조		10,000
		기본조명초과	1회/대		2,000
	소공연장		1회공연	30,000	
	Dry Ice machine (재료비 사용자 부담)		1회/대	20,000	
	DMX strobo		1회/대	10,000	
	Fog machine		1회/대	20,000	
	Haze Fog machine		1회/대	20,000	
무대연습실		오 전	10,000		
		오 후	15,000		
		야 간	20,000		
무대음향	음향기본(유선마이크/모니터스피커 2대)	1회공연	10,000		
	음향반사판	1회공연	30,000		
	모니터스피커	1회/대	10,000		
	각종플레이어	1회/대	10,000		
빔프로젝터		1회/대	20,000		
냉·난방	대공연장	냉 방	1회공연	연료 실사용금액	
		난 방			
		보조난방			
	소공연장	냉 방	1회공연		25,000
		난 방			
	전시실	냉 방	1일전시		30,000
난 방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6)

사천시 조례 제104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7)

[별 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제3조의2 관련)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40,000

-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8)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3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5월 2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5호 중 “관람료 감면”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관람료 감액”으로 하고,
“할인권 1매”를 “할인권 2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10)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68호

사천시 품질·환경 경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4월 22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품질·환경 경영규정 폐지규정

사천시 품질·환경 경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11)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3 - 4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21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 승인번호 : 제2013-3호
2. 점용·사용 변경 승인 년월일 : 2013년 3월 21일
3.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실안동 1096-18번지선 공유수면
4. 점용·사용 승인 면적 : 336.5m²
 - 도크 : 170m², 부잔교 : 66.5m²
5. 점용·사용 목적
 - 어선부착 해조류 제거 작업을 위한 도크와 어선 안전관리 점안에 필요한 PE 부잔교 설치
6. 점용·사용 변경 승인사항
 - 점용·사용 기간
 - 당초 : 2010년 04월 26일 ~ 2013년 04월 25일
 - 변경 : 2013년 04월 26일 ~ 2028년 04월 25일
7.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 변경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12)

승 인 조 건

1. 동 시설물은 선박에 붙은 해초류 등 제거 작업 및 선박의 안정적 계류를 위한 선박 도크 및 부잔교 시설의 기간연장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이용 시,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자재 및 시설물 주변 해역의 쓰레기 등은 발생 즉시 수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의 계류 및 수리 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유류오염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5. 위 사항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7. 동 장소는 용도·지역지구 미지정된 공유수면 및 도시계획시설 『중로3-7호선』이 계획된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3개월 이전에 소유자 부담으로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 합니다.
9.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조정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13)

사천시 고시 제2013 - 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3 - 4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3년 4월 25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20-11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700㎡(직접 : 123㎡, 간접 577㎡)
 - PE부잔교(L=30m, B=4.10m), 도교(L=14m, B=1.2m)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3년 4월 25일 ~ 2028년 4월 24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300호(14)

승 인 조 건

1. 본 사업은 2013년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공유수면에 PE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의 이·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해역이용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7.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8.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9.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